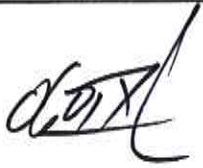


2017년도

용역명 : 2017년 상반기 하남역CY장 2종옹벽 외 1개소 정기점검 및 하자검사 용역

설 계 서

담당	팀장	시설처장	본부장
안도원	박선준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시설처장

2017년도

공사코드 : KR-CKD-17-009

품 신 : (시 설 처) 제 2017 - 호 2017년 월 일

인 가 : (회계통합) 제 2017 - 호 2017년 월 일

용역명 : 2017년 상반기 하남역CY장 2종옹벽 외 1개소 정기점검 및 하자검사 용역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광주-수탁(시설)-일반개량FC(5000770)

사업코드) 시설개량-하자관리(C3N120101)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1
2. 과 업 내 용 서	-----	2
3. 예 정 공 정 표	-----	14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15
5. 용종별 예산내 역 서	-----	16
6. 시설물의정밀안전진단표준계약조건	-----	18

1. 설 계 설 명 서

가. 용 역 명 : 2017년 상반기 하남역CY장 2종옹벽 외 1개소 정기점검 및 하자검사 용역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및 전라남도 화순군 일원

다. 목 적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행하는 안전점검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시행하는 2종 시설물 하자검사로써 시설물에 대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파악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하자보수)를 시행하여 시설물의 효용증진 및 안전확보를 위함

라. 용 역 개 요 : 하자담보책임기간내 2종 시설물 정기점검 및 하자검사용역

1) [옹벽 1개소]호남선 임곡~하남간 180.734km(좌) 하남역CY장 옹벽(L=643m)

2) [교량 1개소]경전선 이양~능주간 256.765km(단) 저불강제2교(L=160m)

마.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 부터 40일간

2. 과 업 내 용 서

- 1.과 업 명 본 과업의 명칭은 '2017년 상반기 하남역CY장 2종옹벽 외 1개소 정기점검 및 하자검사 용역'이라 하고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를 '관리주체', 수급자인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로 칭한다
- 2.과업의 목적 일반철도시설의 개량 및 건설사업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중인 2종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행하는 정기점검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시행하는 하자검사로써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그에 대한 신속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 3.과업의 범위 광주본부 관내 일반철도시설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인 2종 시설물 정기점검 및 하자검사
- 가. [옹벽 1개소] 시설물의 개요
- 1) 시설물명 : 호남선 임곡~하남간 180.734km(좌) 하남역CY장 옹벽(L=643m)
-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동
- 3) 제 원
- 가) 옹벽형식 : 철근콘크리트 + 보강토옹벽
- 나) 옹벽연장 : 643m
- 다) 옹벽노출높이 : 5.2~7.8m
- 라) 준공년월 : 2015년 9월
- 4) 안전점검 및 하자검사 대상시설물의 범위
- 가) 지반,기초부
- 나) 옹벽 전면부
- 다) 주변영향인자(방음시설, 배수시설 및 사면상태) 등

2. 과업내용서

나. [교량 1개소] 시설물의 개요

1) 시설물명 : 경전선 이양~능주간 256.765km(단) 저불강제2교(L=160m)

2) 위 치 :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청풍면

3) 제 원

가) 교량형식 : IPC거더교

나) 교량연장 : 160m

다) 설계하중 : LS-22

라) 준공년월 : 2016년 10월

4) 안전점검 및 하자검사 대상시설물의 범위

가) 상부구조 : 바닥판, 거더

나) 하부구조 : 교대, 교각

다) 받침 : 교량받침

라) 기타부재 :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연석

마) 가로보 및 주변영향인자 등

4.과업수행기간

1)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로 한다

2)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지연사유 등으로 인한 안전점검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 상대방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5.과업세부내용

안전점검 및 하자검사용역 수행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점검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국토교통부 제정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및 '과업 내용서'에 의하여 점검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내용서

가.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준공도서 검토
- 2) 기 시행한 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보고서 검토 분석

나. 현장조사 및 필요시 간단한 시험

- 1) 과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재에 대한 육안 외관조사, 간단한 측정, 외관조사망도 작성
- 2) 중대한 결함 및 진행성 결함 여부 판단
- 3) (필요시)콘크리트강도시험 등 간단한 현장시험
- 4) 이전 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결과와 비교 검토

다. 하자검사

- 1) 현장조사 결과(상태변화 등)의 하자여부 작성
- 2) 외관조사망도(CAD)는 하자손상개소는 별도 구분(도면층 및 색상 기능을 활용)이 가능하도록 작성

라. 조사결과의 분석 및 검토

마. 보수보강방안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의 필요여부 및 보수보강대책(공법) 제시

바. 유지관리방안

- 1)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2) 차후 점검에서의 중점 점검사항

사. 종합결론 및 건의

- 1) 안전점검 및 하자검사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2)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 3) 기타 필요한 사항

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1) 요약보고서 및 본보고서
- 2) 외관조사망도 : 손상물량집계표를 수록하고 CAD파일로 제출

2. 과 업 내 용 서

3) 사진첩

4) 사전조사 자료일체 : 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5) 기타 : 과업수행간 필요시 수행한 시험, 측정, 계측한 자료일체

자. 관리주체(감독자 등)가 용역업무수행자에게 점검수행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6. 과업수행및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주체(감독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협의 조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제출(한국철도공사 「공사및용역관리규정」의 서식을 준용할 것)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용역착수계

나) 사업책임기술자 지정계(위임장, 재직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포함)

다) 안전관리자 지정계(위임장, 재직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포함)

라) 참여기술자 명단

마) 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참여기술자 전원)

바) 예정공정표

사) 조직 및 기구표

아) 보안각서(참여기술자 전원)

자) 청렴이행각서(수급자 대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1)항의 착수 신고서류 1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및 사전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설계도서 등의 사전 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보고(필요시 보고회 시행)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한다.

2. 과업내용서

다.공정보고 및 작업일지 기록

1) 책임기술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매일 작업일지를 작성 보고하고 용역 완료시 작업일지를 관리주체에 제출한다.

가) 과업수행내용 및 공정현황

나)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라) 익일 작업계획

2) 작업책임자(안전관리자)는 매일 현장투입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 용역 완료시 현장안전교육일지를 관리주체에 제출한다.

7.과업의 일반지침

가.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로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 대상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시 선로에 근접하는 점검에 관한 세부 추진일정 및 현장조사 계획에 대하여 감독자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 작성은 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등에관한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67호]에 따른다.

바. 보고서에 사용한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사항 및 측정치의 계산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수록 하여야 하며 변상 부위별 유지관리방안과 보수보강방법 및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 하여야 한다.

사.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사항이며, 관리주체의 해석을 우선시 한다

아.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자.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설계변경 조건 및 정산조건

2. 과업내용서

- 1) 과업수행 중 여건의 변동 및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2) 대가가 국토교통부 고시보다 과다 적용이 되었을 때는 정산하여야 한다.
- 3) 용역 중 사용된 부대비는 정산한다.(교량점검차 등)

카. 계약상대자의 의무

-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 및 한국철도공사 제반사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3)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의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 성과의 첨부 자료로 사용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 4)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 및 인명피해 기타공사 등 진행상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해당부분의 과업을 원인자 부담으로 재 시행해야 하며, 관련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결정하는 책임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재시행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타. 책임기술자의 교체

- 1)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용역수행에 불성실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계약대상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2)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수급 용역사의 정규직 직원이어야 한다.

파. 사진첨은 안전진단에 관련된 기록 사진을 첨부하고 사진에 부호를 부여하고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하. 안전점검시 기존의 구조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보안 대책

가. 과업 수행시 각종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한 정보 및 자료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외부 누설 및 유출을 할 수 없다.

나. 준공시 모든 성과품과 원고는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과 업 내 용 서

다. 참여기술자는 착수서류 제출시 개인별 자필 날인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안전관리

본 과업을 위해 규정을 숙지하고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가. 관련규정 및 방침

- 1) 한국철도공사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 2) 한국철도공사운전취급규정
- 3) 한국철도공사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
- 4) 한국철도공사공사및용역관리규정
- 5) 한국철도공사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 6) 한국철도공사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토목시설처-805호, 2014.04.11.)
- 7) 한국철도공사안전교육및공사단계별세부안전관리대책(선로관리처-911호, 2015.02.25.)
- 8) 한국철도공사광주본부장 철도안전·보건 경영방침
- 9)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고용노동부령)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열차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

-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 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안전시설의 점검
- 2) 1)항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다.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의무

- 1) 「열차운행선로지장업무세칙 제2장(안전조치)」 관련 작업책임자의 의무 이행

2. 과 업 내 용 서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라.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업무

- 1) 용역착수 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한국철도공사공사및용역관리규정 제38조 및 별지 제45호 서식 참조)
- 2) 작업전 안전교육의 시행(한국철도공사공사및용역관리규정 제38조 및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9조 참조)
- 3) 작업중 안전관리(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2장 참조)
- 4) 안전관리 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작성, 제출 및 현장비치

마. 용역 시행 중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용역중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착용등 위험방지조치 후 작업 시행
- 2) 물체가 낙하 비산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후 작업시행
- 3) 출입금지구역 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 4) 용역 시 자재 및 기계 기구류의 건축한계선 방치 금지
- 5) 용역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용역중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작업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관계 소속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6) 모든 작업자는 반대선 진입 금지 및 임의 선로횡단 금지
- 7) 용역시행 전 공사중 알림판 200m, 500m 시·종점부에 설치 후 작업(필요시)
- 8) 용역시행전 해당시설사업소장과 협의후 위험요인 및 현장여건을 확인후 작업계획 수립
- 9) 교량상부작업시 작업책임자(안전관리자), 작업자 전원을 대피할 위치를 사전에 숙지하고 작업계획에 반영

바. 열차운행선 지장작업시 안전관리

- 1) 당일 점검계획 수립 및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 가) 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작업책임자,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열차운행안전관리자)간 당일 작업내용 사전 협의
 - 나) 동원 기술자 인원, 장비, 자재 등 점검준비 상태
 - 다) 당일 작업에 대한 세부적인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 후 작업에 착수한다.
 - 라) 교량 상부 점검시 작업 전 관계역과 반드시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후 작업

2. 과 업 내 용 서

2) 안전점검 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가) 복장 및 안전보호장구 착용상태 확인

나) 열차감시자 임무숙지, 휴대용품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작업전 모든 작업원에 대해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보호구 착용 교육 시행하고 작업에 투입

라) 지적확인환호응답시행(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 제3장 제2절 참조)

마) 음주 또는 약물복용 금지(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 제3장 제3절 참조)

바) 작업원 임의 선로횡단 금지 및 교육

사) 운행선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토목시설처-805, 2014.04.11.) 교육 시행

아) 광주본부장 철도안전·보건 경영방침 숙지교육 실시

3) 안전점검 현장점검 준비 및 안전조치 실태 확인

가) 점검도구 사용시(전동드릴 등) 작동법 숙지 상태 및 작동상태 이상유무 확인

나) 교량점검차 사용시 아우트리거 등 기계 작동법 숙지 상태 및 작동 상태 이상유무 확인

다) 교량상부 작업시 반드시 열차감시자 및 안전요원 배치 여부 확인

4) 점검시행 중 안전수칙 이행실태 확인

가) 지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장 발부 제재조치

나) 위반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용역참여 배제 조치

5) 점검시행 후 작업현장 상태 점검 및 열차운행 지장여부 확인

가) 작업종료 후 안전관리책임자(작업책임자,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열차운행안전관리자) 합동점검 시행
(현장점검 시험/측정장비 및 기계 기구류등 건축한계 지장여부, 기타 위험요인 등)

나) 관계역 및 인접역에 작업현장 상태 및 열차운행 지장여부 통보

6) 점검시행 중 이례사항 발생시 조치 사항

가) 이례사항 발생내용을 관계역과 인접역 및 관제사, 발주처에 신속하고 상세하게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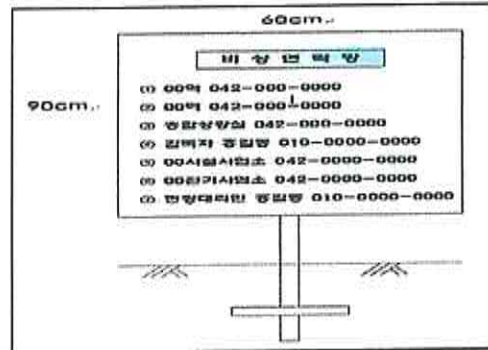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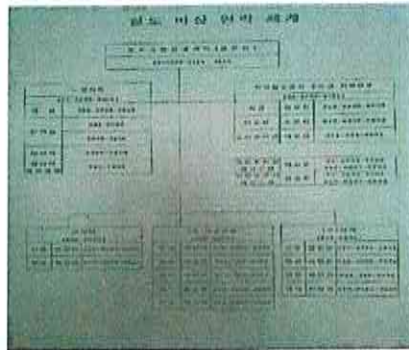
나) 이례사항 발생 현장의 신속한 안전조치 시행

2. 과업내용서

다) 작업시간 지연 발생이 예상되면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는 즉시 인접역에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

라) 이례사항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당일 작업원은 비상연락망을 전원 숙지(휴대)할 것

※ 비상연락망 구축 및 휴대 : 불임을 참조하여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작업원 휴대



7) 긴급상황 발생시 열차안전운행 확보(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20조)

가) 작업과 관련하여 열차운행의 위험을 초래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작업원 등)는 운전취급규정 제2절[열차의 방호] 제264조 및 제265조에

따라 신속히 취하고 해당역장 또는 관제사에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열차감시자의 임무

가)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 외 다른 업무에 종사하면 안됨(열차감시 업무중 휴대폰 사용 금지)

나) 열차접근시 점검자와의 연락방법 강구 과업수행계획서(안전관리)에 반영

다) 인접역 열차운행시각표를 배부 받아 소지하고 열차감시 업무 수행

라) 열차감시자 휴대용품(확성기, 호루라기, 열차시간표, 무전기, 휴대전화기, 백·적색등)을 휴대하고 열차감시 수행

사. 본 과업은 열차가 운행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공사

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입찰시 부실발점이 부과 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시공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2. 과 업 내 용 서

※ 안전계약특수조건[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제2015-52호, '15.09.11) 별표 제48호]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용역계약에 있어 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발주공사와 용역사업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정책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4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 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한국철도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 보건협의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안전, 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임시 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제7조(안전보건지도, 점검 등) ① 한국철도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용역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 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한국철도공사는 안전지도,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한국철도공사에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 용역 중지 등) ① 한국철도공사는 안전지도, 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 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지며 이를 수용하여 민, 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

10.보고서제출

종 류	시 기	제출목록	수량	비 고
중간보고서(안)	준공15일전	요약 보고서(안)	2 부	중간보고서 관리주체 제출
		중간 보고서(안)	2 부	
최종보고서	준 공 일	요약 보고서	2 부	*요약보고서는 단권으로 2부 제출
		최종 보고서	4 부	*시설물별 보고서 제출 -정기점검보고서 -하자검사보고서 -부록포함(외관조사망도,사진첩,사 용장비및기기의사진,사전조사자료 일체,기타참고자료 등)
		CD-ROM	4 부	e-보고서 요약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원본(부 록포함)

※ 보고서 양면 인쇄.

3.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단위	수량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40일)								기 사
			5	10	15	20	25	30	35	40	
1. 자료수집 및 현장답사	식	1	_____								
2. 현장조사(하자점사) 및 각종 시험	식	1		_____							
3. 중간보고서 작성 및 중간보고회 시행	식	1					_____				
4. 최종보고서 작성	식	1							_____		
5. 최종보고회 및 성과품 제출	식	1								_____	
계(40일간)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용 역 비		별 봉
1	도 급 용 역 비	별 봉
2	철 도 공 사 직 원 급	
3	철도공사직원급 일반관리비	

5. 용 중 별 예 산 조 서

용역종류	규 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기사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직접 인건비		식	1									
가. 외 업	고급기술자	인	8.5									
나. 내 업	고급기술자	인	4.4									
2. 제 경 비	직접인건비	%	110									
3.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4. 직접 경비		식	1									
가. 현지여비 및 현장체제비		식	1									
1) 일 비	외업인원수	인	9									
2) 식 비	외업인원수	인	9									
나. 위험수당	외업인건비	%	10									
다. 보고서 등 인쇄비		식	1									
5. 부대공		식	1									

5. 용종별예산조서

용역종류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기사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가. 교량점검차	5ton	대	1									
나. 열차감시원	보통인부	인	1									
계												
6. 부가가치세		%	10									
/												
합계												

6.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표준계약조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467호(2015.07.06. 일부개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인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이하 “갑” 이라 한다)과 안전점검의 실시자인 _____ (이하 “을” 이라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 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을” 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조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고 보수, 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점검의범위) 안전점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용역명 : 2017년 상반기 하남역CY장 2중용벽 외 1개소 정기점검 및 하자검사 용역
2.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및 전라남도 화순군 일원
3. 시설물명 : 호남선 입곡~하남간 180.734km(좌) 하남역CY장 용벽(L=643m), 경전선 이양~능주간 256.765km(단) 지불강제2교(L=160m)
4.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 용벽1개소, 교량1개소 정기점검 및 하자검사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40일간으로 한다.

② 다만,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 과 “을” 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액의 산정 및 변경)

① 계약금액의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에 의하되,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은 과업내용서와 같다.

②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관련조항에 따라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③ 계약기간 중 안전점검의 선택과업의 항목 및 수량의 신규,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을때는 “갑” 과 “을” 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갑” 과 “을” 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대가의 지급등) 안전점검 대가 및 선금의 지급은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선금지급 요령에 의한다.

제6조(실시자의 의무) ① “을” 은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② “을” 은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을” 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갑” 이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기초로 수행하여야 하며 “갑” 은 주요결함사항 및 보수·보강 내용 등에 대하여 “을” 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을” 은 진단수행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실시결과의 통보) ① “을” 은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특별법 제11조1항에 따라 지체없이 “갑” 에게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 은 계약기간 중에도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갑”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실시) “을” 은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갑” 과 협의하여 다른 안전진단전문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설계도서 등의 열람교부 등) ① “을” 은 안전점검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갑” 에게 해당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수 있으며 이 경우 “갑”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다만,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갑” 또는 관련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주체의무) ① “갑” 은 “을” 이 안전점검을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을”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등에 있어서 안전점검 성과를 일관성 있게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갑” 이 소유하고 있는

진단 관련 장비등의 사용 및 운영관리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갑”은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근접조사 및 상세조사가 가능하도록 “을”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인.허가 사항등) “을”이 안전진단업무와 관련하여 인.허가등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은 안전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인허가등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은 안전점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안전점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
2. “갑” “을”이 안전점검 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협의 되었을 때
3. “갑”이 제10조의 의무를 기피하여 “을”의 정상적인 진단이 곤란할 때
4.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3조에 정한 기간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제13조(보안사항) “을”은 안전점검 수행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4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관계법령에 의한다.